

## 연대보증계약서

본 연대보증계약(서)[이하 “본 계약(서)”]은 2018년 2월 28일 아래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다.

- (1) 채권자: 주식회사 테일리펀딩대부(이하 “채권자”)
- (2) 채무자: 한 (이하 “채무자”)
- (3) 연대보증인: 주식회사 \_\_\_\_\_ (이하 “연대보증인”)

### 전문

채무자는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68-6 외 3필지 지상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 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자, 연대보증인 등과 2018년 2월 28일 대출약정금 합계 금 삼십오억원(₩3,500,000,000)의 대출약정(서)[이하 “대출약정(서)”라 하며, 이후 변경 또는 수정된 약정을 포함한다]을 체결하였다.

한편,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(아래에서 정의됨)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.

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.

### 제 1 조 정의

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출약정에서 정의,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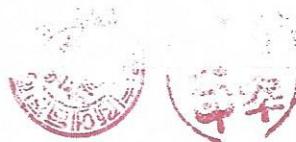
이 약정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1부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채권자가 이 약정서 원본을, 나머지 당사자가 사본 1부씩을 각 보관하기로 하였다.

연대보증인

주식회사 (법인등록번호: 110 )

인천광역시

대표이사 한



이 약정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1부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채권자가 이 약정서 원본을, 나머지 당사자가 사본 1부씩을 각 보관 하기로 하였다.

채권자

주식회사 테일리펀딩대부

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, 제엘-7061-7064호(문정동, 가든파이브라이프동)  
대표이사 이 해 우



## 연대보증계약서

본 연대보증계약(서)[이하 “본 계약(서)”]은 2018년 2월 28일 아래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다.

- (1) 채권자: 주식회사 테일리펀딩대부(이하 “채권자”)
- (2) 채무자: 주식회사 \_\_\_\_\_ (이하 “채무자”)
- (3) 연대보증인: 한 \_\_\_\_\_ (이하 “연대보증인”)

### 전문

채무자는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68-6 외 3필지 지상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 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자, 연대보증인 등과 2018년 2월 28일 대출약정금 합계 금 삼십오억원(₩3,500,000,000)의 대출약정(서)[이하 “대출약정(서)”라 하며, 이후 변경 또는 수정된 약정을 포함한다]을 체결하였다.

한편,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(아래에서 정의됨)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.

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.

### 제 1 조 정의

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출약정에서 정의,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이 약정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1부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채권자가 이 약정서 원본을, 나머지 당사자가 사본 1부씩을 각 보관하기로 하였다.

연대보증인

한 :

(인)

주소: 경기도

주민등록번호:

\*\*\*\*\*

2018년 10월 10일

이 약정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1부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채권자가 이 약정서 원본을, 나머지 당사자가 사본 1부씩을 각 보관하기로 하였다.

채권자

주식회사 데일리편딩대부

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, 제엔-7061-7064호(문정동, 가든파이브라이프동)  
대표이사 이 해 우

